

의안번호	2201352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4.08.06.
추계번호	24C1492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)	○ (현행) 국가는 성·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 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함 ○ (개정) 국가는 성·연령별·<u>특정질환별</u>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20조 (조사·연구사업 등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·연구사업을 수행함 (현행): 1. 성·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(개정): 1. 성·연령별·특정 질환별 지침 개발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)	○ 기관의 기본수행경비로 수행 가능
2	안 제20조 (조사·연구사업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□ (제5조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검진 계획에 ‘특정질환별’ 건강위험을 포함할 경우에도 기존 사업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
-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“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방안 마련 연구(2020)”를 1억 4,000만원에 발주하였으며, 향후 ‘특정질환별’ 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도 별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힘

2. 상세 사유

□ 조사·연구사업 등(안 제20조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범위를 “성별·연령별·특정질환별”로 확대하여 명문화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건강검진 지침을 추가로 개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 건강검진 도입 여부 및 특정 질환별 조사·연구사업 확대 범위 등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, 현시점에 개정안에 따라 확대될 건강검진 및 조사·연구사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추계하기 곤란함
 - －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행 국가건강검진 관련 지침은 ‘건강검진 실시기준’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292호)와 ‘건강검진 사업 안내’를 매년 개정하고 있으나, 예산 소요는 없음
 - － 한편, 당초 일반건강검진과 건강검진 도입 시 ‘검진 의사 매뉴얼’ 개발에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, 법 개정에 따라 신규 검진이 추가되어 검진 의사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